

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

1. 위탁기관 지정 목적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

3. 위탁기관

- 기관명: 건설근로자공제회
 - 대표자: 김상인
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, 8층

4. 위탁업무의 내용

-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 관리
 -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
 - 교육기관 선정 및 위탁 교육기관 관리
 - 위와 관련된 교육기반 구축

5. 위탁기관 지정 기간

-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

6. 재검토기한
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